

[별표 1] <신설 2017. 5. 29.>

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(제21조제2항 관련)

공 단 지 부	관 할 구 역
서 울 중 앙 지 부	서울특별시, 강원도
수 원 지 부	인천광역시, 경기도
대 전 지 부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
대 구 지 부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
부 산 지 부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
광 주 지 부	광주광역시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제주특별자치도